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비용인정되고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Q A라는 법인회사에서 사모펀드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관련 부대비용에 대해 A회사에서 이미 세금계산서도 받고 대금도 지급하였는데 이런 경우, 해당 부대비용을 A회사의 업무용비용으로 보고 부가세공제나 비용인정을 받아도 회계/세법 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들어간 비용들은 대부분 해당 사모펀드설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입니다

A A법인이 사모펀드를 설립하려는 목적이 불명확한데, 사모펀드의 설립이 A법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펀드설립관련 비용처리 및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는 A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수익비용 대응에 따라 진행매출에 비례하여 원가비용 반영함

Q 제가 요즘 궁금한건 저가 수주에 따른 초과원가처리와 관련하여 두개의 회사가 합병했으나 기준이 불일치해서 어떻게 좀더 합리적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
2개의 연구소는 용역사업을 수주하여 현재 진행매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용역사업이 4년간 진행되는 장기프로젝트 입니다
1. 합병전 a연구소는 수주초과원가를 수익비용 대응에 따라 진행매출에 비례하여 수주초과를 경상개발비로 비용처리
2. 합병전 b연구소는 수주초과원가를 수주시점에 충당부채를 기표한 후 진행매출 및 원가처리후 수익이 제로되는 시점에 충당금을 차감하며 비용처리
이상 두가지에 대해 둘다 타당한 듯 하여 통합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는 수익비용 대응에 따라 진행매출에 비례하여 수주초과비용도 비용반영하는 회계처를 하므로 1안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가지분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아니며 사업소득에 해당됨

Q 갑과 을이 공동으로(50 : 50) 건물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을 운영하던 중 일부 상가의 미분양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다 을이 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사례로
질의1)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질의2)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일 경우 회계처리는

차) 토지·건물 증가분 *** 대) 유형자산 처분이익 ***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하고 을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A 1. 자가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 부가46015-4306, 1999.10.25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가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22, 2006.01.06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가지분을 다른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2.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하면 됩니다.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자산으로 반영함

Q 보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cctv 구입 및 설치시 자산처리하여 '기계장치' '기타부속설비' '비품'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기비용인 '소모품비'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자산처리해야 한다면 어느 계정이 더 적절한지요

A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물품은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CCTV의 경우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